의 안 번 호	제123호
의결 연월일	2020. 10. 21.

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0월 13일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0년 10월 13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0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행정지원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논산시 재향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및 ‘논산시 재향경우회’ 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 (안 제1조 ~ 제2조)

○ 지원대상 사업 규정 (안 제3조) : 법질서 확립 및 홍보, 치안협력 및 지원, 시민 복리증진과 안전 위한 봉사활동, 호국영령 추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
○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준용 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